

## 농촌노인의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의식 및 요구

### Needs and Consciousness of Housing for the Elderly in Rural Area

최 병 숙\*

Choi, Byung-Sook

오찬옥\*\*

Oh, Chan-Ohk

홍찬선\*\*\*

Hong, Chan-Sun

박선희\*\*\*\*

Park, Sun-Hee

박정란\*\*\*\*\*

Park, Jung-Rhan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housing needs of the elderly who lived in rural area and suggest the planning directions of the housing for the rural elderly. The subjects were 192 elderlyes who lived in the rural area in Gyeongnam and Chonbuk. They were selected by using the stratified sampling method. Also, the interview method was used for collecting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ost of the rural elderly had some problems in their health. Thus, the housing for them should be planned on the basis of their health conditions. 2) The rural elderly had active interaction with their neighborhoods. Therefore, the housing for them should be planned for maintaining this active relation. 3) The rural elderly has lived in their housing for long time and wanted to live there as long as possible. This implies that the concept of 'aging in place'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important design issues in the rural housing for the elderly. 4) Even though many rural elderlyes didn't know about the planned hou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ey had intentions to live in there if they were provided in rural area. 5) The rural elderly preferred the monthly payment system or the life long payment system as the payment system of the planned hou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Also, they wanted that facility to be maintained by the government. 6) The detached housing type or three story townhouse type which is located in each rural village as small size would be desirable as the housing for the rural elderly. 7) The 10-30 pyung would be desirable as the size of housing unit. Also, 2-6 persons per room in case of sharing a bedroom. 8) Ondol-bang would be desirable, however the size of the bedroom sh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using the bed.

Keywords : Housing for the Rural Elderly, Hou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Housing Needs

주 요 어 : 농촌노인주거, 노인공동주거, 노인주거요구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현재 전체 인구의 9.1%로 UN의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에 속해 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며,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촌사회는 이미 2002년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시작되었고, 2004년 말 기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일부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 고령사회가 되었다. 초 고령화 지역은 전국 234개 시군구 중 35개 군으로 1년 전에 비해 5곳이나 늘어났다. 이러한 농촌의 초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sup>1)</sup>.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전통적인 3세대 가족형태를 유지해 오다 산업화 이후 급격히 핵가족화되었고, 젊은 연령층의 이농현상으로 영농세대 역시도 노령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상당수가 노인층으로 구성되어 있고<sup>2)</sup>, 농촌 노인의 60%가 단독세대로 생활하고 있으며 독거 노인세대도 21.2%에 달한다(한정자, 한경혜, 모선희, 유성호, 김양희, 2002). 이와 같이 오

본 연구는 2005년 농림부 농촌개발연구사업비로 한국농촌연구소에서 수행한 '고령화 농촌마을 주민의 상호 Care 시스템 및 주거 개선에 관한 연구(I)'의 일부임.

\*정희원(주저자), 전북대학교 아동·주거전공 조교수, 인간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정희원,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유니버설디자인연구소 수석연구원

\*\*\*정희원,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촌지역연구실 주임연구원

\*\*\*\*정희원, 전북대학교 아동·주거전공 교수, 인간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정희원,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 통계청의 2005년 10월 6일 발표에 따르면 시도별로 전남이 14.9%로 유일하게 노인 인구비중 14% 이상 - 20% 미만의 '고령사회'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 외 여러 지역이 '초고령 사회'로 경남 해군이 25.8%로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의령군(25.7%)를 비롯해 경북 의성(25.2%), 군위군(25.0%), 전남 고흥(24.9%), 광성군(24.6%) 등의 순이었다(동아일보, 2005년 10월 17일자).

2) 전국 면부 인구의 연령별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노령화 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197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8.47%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에는 10.72%, 1990년에는 16.37%, 2000년에는 27.73%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임상봉 외, 2004).

늘날 농촌 노인은 가족의 보호 하에 생활하는 전통적 개념이 사라진 사회에 살고 있고<sup>3)</sup>, 앞으로도 이러한 삶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고령화된 농촌의 노인을 돌보는 일은 가족적인 차원에서보다 사회적인 복지 차원에서 준비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열악하고 낙후된 농촌에서 노인문제를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3대 기본 욕구 중의 하나인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은 필수적이다.

농촌 노인관련 선행연구는 농촌 노인복지의 실태와 정책적 및 제도적 필요성에 대하여 주로 진행되었고, 일부 농촌노인을 위한 공동주거시설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농촌 공동주거시설의 수용에 따른 공간적 형태를 다른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농촌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 같이 구체적인 물리적 시설에 대한 공간계획안을 제시한 연구는 없다<sup>4)</sup>. 또한 노인의 주거·복지 관련 연구는 주로 도시 중심의 노인 공동주거시설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것이며, 농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거연구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주거로 한정 연구됨에 따라 소외된 저소득층이나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초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마을의 노인복지 문제를 노인공동주거로 접근하여, 농촌 주거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생활 실태와 주거의식 및 요구의 파악을 통해 농촌사회에 적합한 노인공동주거의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농촌노인의 생활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둘째, 농촌노인의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의식과 요구를 파악하며, 셋째, 이상을 종합하여 농촌 마을단위에 적합한 노인공동주거의 계획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3) 통계청(2005.7)자료에 의하면 2005년 노인 100명 중 18명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이며, 이러한 수치는 1990년 8.9%에서 2005년 18.0%로 1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2020년의 경우 노인 인구 1.8배 증가를 예측하고 있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박대식, 정명채, 송미령, 심재만, 조홍식, 최준렬(2004)의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박경란, 오찬옥, 조현, 김희년, 김진홍(2003)의 경남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노인서비스 연구, 박윤호, 최병숙, 이상문, 진미윤, 전영미, 채철균, 김진희, 오민근(2003)의 ‘농촌 경관주택 정책 및 마을 리모델링 방안 연구’, 한정자, 한경혜, 모성희, 유성희, 김양희(2002)의 농촌지역 노인복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박대식, 정기환, 최경환, 허장, 조홍식, 남기철(2001)의 농촌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유성호(2001, 2004)의 노인복지관련 연구.

## 3. 조사개요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의 16개 면, 48개 마을의 남녀 노인 192명이었다.

조사대상 선정은 먼저 2003년과 2004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연구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경남지역과 전북지역을 선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군단위 선정은 2개 도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2개 군씩을 선정한 결과 경남의 남해군과 의령군이, 전북의 임실군과 순창군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읍면단위의 선정은 군내 노인인구 비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군단위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면과, 중간인 면, 가장 낮은 면으로 구분해 3개 면을 선정하였으며, 읍은 일반 면단위와는 규모나 생활환경면에서 차별화되는 농촌지역이므로 분석 필요상 조사대상지역에 포함하였다. 마을의 선정은 선정된 면단위의 리단위 인구를 파악한 결과, 노인인구의 비율이 면단위에 비해 차이가 더욱 커졌으므로 면단위에서의 3개 마을선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상위 75%, 50%, 25%의 48개 리(2개도×2개군×4개면×3개마을)<sup>5)</sup>를 조사마을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리 단위에서 65세 이상 남녀 노인 각각 2명씩, 전체 19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남녀 각각 동일하게 표집하였으나 경남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자 노인 1명이 남자노인으로 대체되었다.

###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노인의 생활실태와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의식 및 요구 부분으로 대별된다.

#### (1) 노인의 생활실태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 - 연령, 가족수, 가족구성, 연수입, 수입원과 지출원

② 건강 및 일상생활 - 건강상태, 아픈 곳 유무, 일상 생 활동작 수행능력

③ 사회적 관계 - 자녀 방문 및 전화번호, 이웃만남빈도

#### (2)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의식과 요구

① 현 주택에서의 지속 거주의사 및 만족도 - 마을 및 주택에의 거주기간, 현 주택에의 지속 거주의사, 배우자 사망 및 거동불편 시 지속 거주의사, 거동불

5) 조사마을은 경남 남해군 서면(서호리, 예계리, 노구리), 상주면(두모리, 임촌리, 금포리), 미조면(항도리, 미조리, 설리), 남해읍(아산리, 양지리, 대입현리), 경남 의령군 궁류면(계현리, 익구리, 경산리), 대의면(신전리, 심지리, 중촌리), 부림면(목방리, 익구리, 경산리), 의령읍(중동리, 중리, 대산리)과, 전북 임실군 신덕면(신흥리, 사리기, 월성리), 관촌면(관촌1구, 신천리, 방현리), 삼계면(뇌촌리, 사오리, 비홍리), 임실읍(상리, 정촌리, 하동리), 전북 순창군 복흥면(동산리, 월성리, 송정리), 유동면(의이리, 오거리, 책암리), 적성면(모산리, 율지리, 괴정리), 순창읍(남계리, 사정1리, 고성리)임.

- 편 시 수발자 유무 및 종류, 현재 주택에의 만족도
- ②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인식 및 입주의사 - 인지 정도, 입주의사 및 입주방식, 종신비용의 반환여부, 하숙형의 가능 비용, 재산처분의사 및 서비스 요구, 운영주체
  - ③ 노인공동주거의 위치, 규모 및 공간구성 요구 - 희망 동거인, 지역내 위치, 주거유형 및 충수, 시설규모, 개별 집 규모, 침실사용방식, 1실 사용인원, 취침실의 기거양식, TV시청 및 식사자세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2005년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대상마을을 연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훈련된 조사원<sup>6)</sup>에 의한 설문지 면접조사방법을 이용하여 하였다. 면접조사 자료는 조사원이 직접 정리하였고 개방형 문항은 연구자들이 재분류하여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 농촌 노인주거관련 연구경향

농촌노인주거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농촌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 주거에 대한 의식 및 선호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주거시설에의 입주의사 및 필요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의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가 모두 있었으나, 가능한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지만 노후에 건강이 악화될 경우는 노인공동주거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40-59세의 중장년층은 노인주거전용주택에 대한 선호는 낮았으며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필요할 때 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형을 선호하여 재가주거복지가 필요함을 암시해 주었다(송석전, 2003). 또한 이를 중 일부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거나 또는 시설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설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노인주거시설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해 주었다. 그러나 충남지역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35-60세의 중장년층은 실비노인주택이나 유료노인복지주택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서비스와 스포츠 부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원하였으며, 노후가 되었을 때 고독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입주하고자 하였다(조남규, 2003). 또한 예금이나 보험 등으로 입주비용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시설의 편리성, 비용, 자녀와의 거리, 의료서비스 등을 고려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강원, 충북, 경남, 전북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도 노후에 몸이

불편해지면 공동주거시설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윤호 외 7인, 2003).

농촌지역 노인들은 노인주거시설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었으며, 중장년층보다 노인공동주거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자 거주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노인공동주거에 입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촌노인들은 과반수 이상이 노인주거시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시설의 인지도는 66.1%, 유료 양로/요양시설 인지도는 57.2%였다(한정자 외 4인, 2002). 농촌노인들은 실버타운이나 노인아파트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농촌지역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다(이희승, 2004). 즉 노인시설에의 입주보다는 현재 집을 수리하여 그대로 거주하기를 희망하여 지금 살던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홈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들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또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배우자 사망 후에는 노인시설에의 입주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금순(2002)의 연구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게 되더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신의 주택에서 단독으로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노인들의 노인공동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볼 수 있었다. 한편 김연호(2002)의 연구에서는 7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노인전용주거시설에의 입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이유는 케어, 의료서비스, 편리성, 친교, 자녀부담완화 등이며, 또한 입주시설에서의 고려사항도 의료서비스, 거주공간의 폐적성, 레저프로그램 수준, 경영의 신뢰성, 식사서비스 수준의 순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를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농촌 노인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서 의료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시설로 병의원 같은 의료시설과 목욕탕, 경로당을 선호하였다(홍성태, 2001).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로 판단해볼 때 농촌 노인 혹은 예비노인들은 노인공동주거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며, 자녀와는 따로 거주하길 희망하였으나 노인공동주거에의 거주의사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와 배우자와 사별 이유로 거주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적합한 노인공동주거는 연령층으로 단순히 그 필요성을 진단하기 보다는 농촌 노인의 정서와 배우자 사별,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여 거동 불편 시 거주할 수 있는 노인공동주거임을 알 수 있었다.

## III. 농촌노인의 생활실태

1.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1) 연령 및 가족사항

6) 조사원은 주거와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 및 대학생이며 본 조사에 앞서 경로식당 이용노인 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설문방법 및 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노인의 연령은 평균 74.0세(73.4세, 74.6세)<sup>7)</sup>로, 70대 초반이 37.5%, 60대 후반이 22.4%, 70대 후반이 20.8%의 순으로 70대가 58.3%로 가장 많았다(표 1). 지역별로는 경남과 전북지역 모두 70대 초반이 34.4%와 40.6%로 많았으나, 경남지역은 60대 후반이 27.1%로 그 다음으로 많은 반면, 전북지역은 70대 후반이 21.9%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평균 연령도 전북지역이 경남지역 보다 1세 정도 많았다.

가족수는 대부분이 1, 2인 가구로 평균 2.1인(2.0인, 2.2인)이었으며, 2인인 경우가 56.3%(54.2%, 58.3%)로 과반수가 넘었고 다음은 1인 가구로 27.6%(31.3%, 24.0%)나 되었다. 가족구성을 보면 노인부부가구가 53.4%(52.6%, 54.2%)로 과반수가 넘었고 다음은 노인단독가구로 27.7%(31.6%, 24.0%)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노인 대부분이 부부나 단독으로 구성된 1, 2인 노인가구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의 농촌주택을 노인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을 암시해 준다.

표 1.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특성    | 구분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연령    | 65 - 69세                    | 26(27.1)   | 17(17.7)   | 43(22.4)   |
|       | 70 - 74세                    | 33(34.4)   | 39(40.6)   | 72(37.5)   |
|       | 75 - 79세                    | 19(19.8)   | 21(21.9)   | 40(20.8)   |
|       | 80 - 84세                    | 16(16.7)   | 10(10.4)   | 26(13.5)   |
|       | 85 - 89세                    | 2( 2.1)    | 9( 9.4)    | 11( 5.7)   |
|       | 계                           | 96(100.0)  | 96(100.0)  | 192(100.0) |
| 가족수   | 평균(S.D)                     | 73.4(5.5)  | 74.6(5.9)  | 74.0(5.7)  |
|       | 1인                          | 30(31.3)   | 23(24.0)   | 53(27.6)   |
|       | 2인                          | 52(54.2)   | 56(58.3)   | 108(56.3)  |
|       | 3 - 6인                      | 14(14.6)   | 17(17.7)   | 31(16.1)   |
|       | 계                           | 96(100.0)  | 96(100.0)  | 192(100.0) |
|       | 평균(S.D)                     | 2.0(1.0)   | 2.2(1.1)   | 2.1(1.1)   |
| 가족 구성 | 노인단독                        | 30(31.6)   | 23(24.0)   | 53(27.7)   |
|       | 노인부부                        | 50(52.6)   | 52(54.2)   | 102(53.4)  |
|       | 노인단독+자녀부부<br>(미혼자녀, 손자녀)    | 10(10.5)   | 10(10.4)   | 20(10.5)   |
|       | 노인부부+자녀<br>(편부, 편모, 미혼+손자녀) | 5( 5.3)    | 11(11.5)   | 16( 8.4)   |
|       | 계                           | 95(100.0)  | 96(100.0)  | 191(100.0) |

## 2) 경제적 사항

노인들의 연간 수입은 거의 없는 경우에서부터 최대 7,500만원인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표 2). 조사대상 노인의 연간 평균수입은 약 479만원(517만원, 448만원)이었으며, 전체적으로는 100-200만원 미만이 17.4%(14.7%, 19.5%), 300-400만원 미만이 15.5%(16.2%, 14.9%), 1,000만원 이상이 14.8%(14.7%, 14.9%), 100만원 미만이 14.2%(20.6%, 9.2%)로 노인 간 차이가 큰 것

7) ( )안은 경남과 전북지역의 순임.

표 2. 노인의 연 수입

| 연수입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100만원 미만     | 15(21.7)   | 7(9.2)     | 22(14.2)   |
| 100-200만원 미만 | 10(14.5)   | 17(19.8)   | 27(17.4)   |
| 200-300만원 미만 | 9(13.0)    | 11(12.8)   | 20(12.9)   |
| 300-400만원 미만 | 11(15.9)   | 13(15.1)   | 24(15.5)   |
| 400-600만원 미만 | 9(13.0)    | 16(18.6)   | 25(16.1)   |
| 600-900만원 미만 | 5( 7.2)    | 9(10.5)    | 14( 9.0)   |
| 1,000만원 이상   | 10(14.5)   | 13(15.1)   | 23(14.8)   |
| 계            | 69(100.0)  | 86(100.0)  | 155(100.0) |
| 평균(S.D)      | 517만(981만) | 448만(412만) | 479만(721만) |

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 노인은 100만원 미만인 노인이 21.7%로 가장 많고 600-900만원이 7.2%로 가장 적었으며 나머지는 비슷한 분포를 보인 반면, 전북지역 노인은 100-200만원 미만이 19.8%로 가장 많고 100만원 미만(9.2%)을 제외하고는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 연수입은 경남지역이 전북지역보다 많았다.

또한 농촌노인들은 한 가지 이상의 수입원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노인의 주요 수입원은 농사로 48.9%(45.7%, 52.1%)이며 다음은 자녀로부터의 보조로 30.9%(35.9%, 2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노인의 수입원 3순위

| 수입원     | 지역 | 1순위<br>f(%) | 2순위<br>f(%) | 3순위<br>f(%) |
|---------|----|-------------|-------------|-------------|
| 농사      | 경남 | 42(45.7)    | 14(31.1)    | 2(18.2)     |
|         | 전북 | 50(52.1)    | 13(17.3)    | -           |
|         | 전체 | 92(48.9)    | 27(22.5)    | 2( 5.6)     |
| 자녀의 보조  | 경남 | 33(35.9)    | 16(35.6)    | 3(27.3)     |
|         | 전북 | 25(26.0)    | 37(49.3)    | 8(32.0)     |
|         | 전체 | 58(30.9)    | 53(44.2)    | 11(30.6)    |
| 정부보조금   | 경남 | 6( 6.5)     | 3( 6.7)     | 4(36.4)     |
|         | 전북 | 11(11.5)    | 12(16.0)    | 7(28.0)     |
|         | 전체 | 17( 9.0)    | 15(12.5)    | 11(30.6)    |
| 연금      | 경남 | 7( 7.6)     | 8(17.8)     | -           |
|         | 전북 | 6( 6.3)     | 12(16.0)    | 8(32.0)     |
|         | 전체 | 13( 6.9)    | 20(16.7)    | 8(22.0)     |
| 자영업     | 경남 | 3( 3.3)     | 1( 2.2)     | -           |
|         | 전북 | 1( 1.0)     | -           | -           |
|         | 전체 | 4( 2.1)     | 1( .8)      | -           |
| 풀풀이, 잡일 | 경남 | 1( 1.1)     | 1( 2.2)     | -           |
|         | 전북 | 2( 2.1)     | -           | 2( 8.0)     |
|         | 전체 | 3( 1.6)     | 1( .8)      | 2( 5.6)     |
| (퇴직금 등) | 경남 | -           | 2( 4.4)     | 2(18.2)     |
|         | 전북 | 1( 1.0)     | 1( .1)      | -           |
|         | 전체 | 1( .5)      | 3( 1.7)     | 2( 5.6)     |
| 계       | 경남 | 92(100.0)   | 45(100.0)   | 11(100.0)   |
|         | 전북 | 96(100.0)   | 75(100.0)   | 25(100.0)   |
|         | 전체 | 188(100.0)  | 120(100.0)  | 36(100.0)   |

이러한 수입의 주요 지출원은 생활비 47.1%(52.6%, 41.7%), 의료비 29.3%(21.1%, 37.5%), 농사관련비용 17.3% (17.9%, 16.7%)인 것으로 나타나(표 4), 지출원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4. 노인의 지출원 3순위

| 지출           | 지역 | 1순위<br>f(%) | 2순위<br>f(%) | 3순위<br>f(%) |
|--------------|----|-------------|-------------|-------------|
| 생활비          | 경남 | 50(52.6)    | 29(40.3)    | 6(26.1)     |
|              | 전북 | 40(41.7)    | 47(50.5)    | 7(10.9)     |
|              | 전체 | 90(47.1)    | 76(46.1)    | 13(14.9)    |
| 의료비          | 경남 | 20(21.1)    | 24(33.3)    | 5(21.7)     |
|              | 전북 | 36(37.5)    | 29(31.2)    | 21(32.8)    |
|              | 전체 | 56(29.3)    | 53(32.1)    | 26(29.9)    |
| 농사관련비용       | 경남 | 17(17.9)    | 13(18.1)    | -           |
|              | 전북 | 16(16.7)    | 15(16.1)    | 15(23.4)    |
|              | 전체 | 33(17.3)    | 28(17.0)    | 15(17.2)    |
| 경조사비         | 경남 | 4( 4.2)     | 2( 2.8)     | 6(26.1)     |
|              | 전북 | 1( 1.0)     | 2( 2.2)     | 17(26.6)    |
|              | 전체 | 5( 2.6)     | 4( 2.4)     | 23(26.4)    |
| 손자녀/자식<br>에게 | 경남 | 2( 2.1)     | 3( 4.2)     | 4(17.4)     |
|              | 전북 | 2( 2.1)     | -           | 3( 4.7)     |
|              | 전체 | 4( 2.1)     | 3( 1.8)     | 7( 8.0)     |
| 기타           | 경남 | 2( 2.1)     | 1( 1.4)     | 2( 8.7)     |
|              | 전북 | 1( 1.0)     | -           | 1( 1.6)     |
|              | 전체 | 3( 1.6)     | 1( .6)      | 3( 3.4)     |
| 계            | 경남 | 95(100.0)   | 72(100.0)   | 23(100.0)   |
|              | 전북 | 96(100.0)   | 93(100.0)   | 64(100.0)   |
|              | 전체 | 191(100.0)  | 165(100.0)  | 87(100.0)   |

## 2. 노인의 건강 및 일상생활

### 1) 건강상태

조사대상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57.1%(47.9%, 66.3%)가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노인은 24%(28.1%, 20.0%)에 불과하였다(표 5). 또한 86.4%(85.4%, 87.4%)의 노인들이 아픈 곳이 있다고 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각종 질

표 5. 노인의 건강상태

| 건강            | 구분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건강<br>상태      | 아주 건강하다    | 8(8.3)     | 2(2.1)     | 10(5.2)    |
|               | 건강한 편이다    | 19(19.8)   | 17(17.9)   | 36(18.8)   |
|               | 보통이다       | 23(24.0)   | 13(13.7)   | 36(18.8)   |
|               | 건강치 못하다    | 45(46.9)   | 57(60.0)   | 102(53.4)  |
|               | 아주 건강치 못하다 | 1( 1.0)    | 6( 6.3)    | 7( 3.7)    |
| 아픈<br>곳<br>유무 | 계          | 96(100.0)  | 95(100.0)  | 191(100.0) |
|               | 아픈 곳 있음    | 82(85.4)   | 83(87.4)   | 165(86.4)  |
|               | 아픈 곳 없음    | 14(14.6)   | 12(12.6)   | 26(13.6)   |
|               | 계          | 96(100.0)  | 95(100.0)  | 191(100.0) |

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농촌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활비 중 의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앞의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주며, 따라서 농촌노인을 위한 주거계획을 할 때 노인의 건강상태를 배려한 주거계획이 요구됨을 보여 준다.

### 2) 일상생활작의 수행능력

걷기와 목욕, 화장실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식사준비, 전화걸기, 장보기, 공과금납부 등 8개 항목<sup>8)</sup>에 대한 노인들의 일상생활작 수행능력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든 동작에 대하여 59.9% (63.5%, 56.3%) - 75.4% (89.5%, 67.7%)에 이르는 노인들이 ‘혼자서 쉽게’ 동작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노인들 대부분은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하여 일부 노인들이 일상생활작에서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노인의 일상생활작 수행능력

| 생활<br>동작       | 지역 | 혼자<br>쉽게<br>f(%) | 혼자<br>불편<br>f(%) | 보조기로<br>가능<br>f(%) | 거의<br>불가능<br>f(%) | 불가능<br>f(%) | 계<br>f |
|----------------|----|------------------|------------------|--------------------|-------------------|-------------|--------|
| 생활<br>동작       | 경남 | 85(89.5)         | 7( 7.4)          | 1( 1.1)            | -                 | 2(2.1)      | 95     |
|                | 전북 | 59(61.5)         | 21(21.9)         | 5( 5.2)            | 7(7.3)            | 4(4.2)      | 96     |
|                | 전체 | 144(75.4)        | 28(14.7)         | 6( 3.1)            | 7(3.7)            | 6(3.1)      | 191    |
| 식사<br>준비       | 경남 | 76(80.9)         | 15(16.0)         | 2( 2.1)            | 1(1.1)            | -           | 94     |
|                | 전북 | 64(66.7)         | 23(24.0)         | 7( 7.3)            | 2(2.1)            | -           | 96     |
|                | 전체 | 140(73.7)        | 38(20.0)         | 9( 4.7)            | 3(1.6)            | -           | 190    |
| 공과금<br>납부      | 경남 | 60(80.0)         | 9(12.0)          | 4( 5.3)            | 2(2.7)            | -           | 75     |
|                | 전북 | 60(62.5)         | 19(19.8)         | 9( 9.4)            | 6(6.3)            | 2(2.1)      | 96     |
|                | 전체 | 120(70.2)        | 28(16.4)         | 13( 7.6)           | 8(4.7)            | 2(1.2)      | 171    |
| 장보기            | 경남 | 64(71.9)         | 17(19.1)         | 2( 2.2)            | 6(6.7)            | -           | 89     |
|                | 전북 | 62(64.6)         | 19(19.8)         | 6( 6.3)            | 8(8.3)            | 1(1.0)      | 96     |
|                | 전체 | 126(68.1)        | 36(19.5)         | 8( 4.3)            | 14(7.6)           | 1(.5)       | 185    |
| 목욕             | 경남 | 64(66.7)         | 26(27.1)         | 4( 4.2)            | 2(2.1)            | -           | 96     |
|                | 전북 | 64(66.7)         | 26(27.1)         | 4( 4.2)            | 1(1.0)            | 1(1.0)      | 96     |
|                | 전체 | 128(66.7)        | 52(27.1)         | 8( 4.2)            | 3(1.6)            | 1(.5)       | 192    |
| 걸기             | 경남 | 61(63.5)         | 28(29.2)         | 6( 6.3)            | 1(1.0)            | -           | 96     |
|                | 전북 | 54(56.3)         | 27(28.1)         | 13(13.5)           | 1(1.0)            | 1(1.0)      | 96     |
|                | 전체 | 115(59.9)        | 55(28.6)         | 19( 9.9)           | 2(1.0)            | 1(.5)       | 192    |
| 화장실<br>이용      | 경남 | 66(68.8)         | 25(26.0)         | 4( 4.2)            | 1(1.0)            | -           | 96     |
|                | 전북 | 64(66.7)         | 27(28.1)         | 5( 5.2)            | -                 | -           | 96     |
|                | 전체 | 130(67.7)        | 52(27.1)         | 9( 4.7)            | 1(.5)             | -           | 192    |
| 대중<br>교통<br>이용 | 경남 | 65(67.7)         | 25(26.0)         | 4( 4.2)            | 2(2.1)            | -           | 96     |
|                | 전북 | 62(64.6)         | 23(24.0)         | 4( 4.2)            | 4(4.2)            | 3(3.1)      | 96     |
|                | 전체 | 127(66.1)        | 48(25.0)         | 8( 4.2)            | 6(3.1)            | 3(1.6)      | 192    |

8) 이성국(2005)과 강경숙(2003)이 사용한 기본적 일상생활작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항목 중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함.

### 3. 노인의 사회적 관계

#### 1) 자녀와의 교류

농촌 노인의 자녀와의 교류정도는 자녀의 방문빈도와 전화 거는 빈도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자녀의 방문빈도는 지역간에 차이를 보여 경남지역의 경우는 '자주' 방문(25.1%)하거나 월 1회 이내(15.6%)라고 한 경우가 40.7%가 되어 40%정도가 비교적 자주 방문하고 있는 반면, 전북지역의 경우는 1년에 1-4회 정도가 59.3%나 되지만 월 1회 이내는 13.6%가 되어 자녀의 방문빈도가 적은 편이었다(표 7).

한편 자녀가 전화 거는 빈도도 지역간에 차이를 보여, 경남지역의 경우는 '자주' 하거나(47.4%) 월 1회 이내(36.9%) 하는 경우가 84.3%로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전북지역의 경우도 주 2-3회(43.3%)나 주 1회(25.6%) 전화 거는 경우가 68.9%로 많아 직접 방문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므로 직접 방문은 자주 하지 못하지만 전화는 비교적 자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자녀의 방문 및 전화 거는 빈도

|          | 빈도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방문<br>빈도 | 매일           | 1( 1.0)    | 1( 1.0)    | 2( 1.0)    |
|          | 주 1회         | 2( 2.1)    | 6( 6.3)    | 8( 4.2)    |
|          | 월 1- 2회      | 5( 5.2)    | 2( 2.1)    | 7( 3.6)    |
|          | 월 1회         | 7( 7.3)    | 4( 4.2)    | 11( 5.7)   |
|          | 1년에 5- 6회    | 5( 5.2)    | 8( 8.3)    | 13( 6.8)   |
|          | 1년에 4- 5번    | 2( 2.1)    | 8( 8.3)    | 10( 5.2)   |
|          | 1년에 3- 4번    | 9( 9.4)    | 32(33.3)   | 41(21.4)   |
|          | 1년에 1- 2회    | 6( 6.3)    | 25(26.0)   | 31(16.1)   |
|          | 자주           | 24(25.1)   | 1( 1.0)    | 25(13.0)   |
|          | 자주못옴/잘 안옴/가끔 | 30(31.3)   | 4( 4.2)    | 34(17.7)   |
| 전화<br>빈도 | 휴가, 명절 등     | 2( 2.1)    | 2( 2.1)    | 4( 2.1)    |
|          | 기타           | 3( 3.1)    | 3( 3.1)    | 6( 3.1)    |
|          | 계            | 95(100.0)  | 96(100.0)  | 192(100.0) |
|          | 매일           | 8( 8.4)    | 6( 6.7)    | 14( 7.6)   |
|          | 주 2- 3회      | 5( 5.3)    | 39(43.3)   | 44(23.8)   |
|          | 주 1회         | 9( 9.5)    | 23(25.6)   | 32(17.3)   |
|          | 주 1-2회       | 1( 1.1)    | -          | 1( .5)     |
|          | 월 2- 3회      | 6( 6.3)    | 13(14.4)   | 19(10.3)   |
|          | 월 1회         | 6( 6.3)    | 1( 1.1)    | 7( 3.8)    |
|          | 1년에 5- 6회    | 2( 2.1)    | 1( 1.1)    | 3( 1.6)    |

#### 2) 이웃과의 교류

이웃과는 65.1%(57.3%, 72.9%)가 매일 만나고 30.7%

표 8. 이웃과의 만남정도

| 만남 빈도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매일                  | 55(57.3)   | 70(72.9)   | 125(65.1)  |
| 자주                  | 39(40.6)   | 20(20.8)   | 59(30.7)   |
| 기타<br>(안만남, 한번씩 만남) | 2( 2.1)    | 6( 6.3)    | 8( 4.2)    |
| 계                   | 96(100.0)  | 96(100.0)  | 192(100.0) |

(40.6%, 20.8%)가 자주 만난다고 하여 거의 대부분의 농촌노인이 이웃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 IV.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의식과 요구

#### 1. 현재 주택에서의 지속 거주의사

##### 1)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및 지속 거주의사

###### (1) 현 마을 및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조사대상 노인의 77.6%(82.3%, 72.0%)는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서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49.2%(56.8%, 41.7%)는 현재의 주택에서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이는 농촌노인들은 태어난 곳에서 그대로 거주하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농촌노인의 주거는 이제까지 살아온 지역 내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을 암시해 준다.

표 9. 마을 및 주택에의 거주기간

| 거주기간         | 구분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마을<br>거주기간   | 10년 미만    | 1( 1.0)    | 5( 5.2)    | 6( 3.1)    |
|              | 10-30년 미만 | 6( 6.3)    | 3( 3.1)    | 9( 4.7)    |
|              | 30-50년 미만 | 10(10.4)   | 18(18.8)   | 28(14.6)   |
|              | 50-70년 미만 | 52(54.2)   | 42(43.8)   | 94(49.0)   |
|              | 70 - 89년  | 27(28.1)   | 28(29.2)   | 55(28.6)   |
|              | 계         | 96(100.0)  | 96(100.0)  | 192(100.0) |
| 현 주택<br>거주기간 | 10년 미만    | 6( 6.3)    | 12(12.5)   | 18( 9.4)   |
|              | 10-30년 미만 | 19(20.0)   | 21(21.9)   | 40(20.9)   |
|              | 30-50년 미만 | 16(16.8)   | 23(24.0)   | 39(20.4)   |
|              | 50-70년 미만 | 36(37.9)   | 35(36.5)   | 71(37.2)   |
|              | 70-82년    | 18(18.9)   | 5( 5.2)    | 23(12.0)   |
|              | 계         | 95(100.0)  | 96(100.0)  | 191(100.0) |

###### (2) 현 주택에서의 지속 거주의사

대부분의 노인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여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표 10).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언제까지 살 생각인지에 대하여 91.6%(92.6%, 90.6%)가 '여생을 마무리 할 때까지'라고 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의 계속 거주의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까지 살아온 친숙한 환경에서 가능한 오래도록 살고자 하는 노인들의 바램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달리 선택할 노인주거대

표 10. 현 주택에의 지속 거주의사

|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여생을 마무리 할 때까지  | 87(92.6)   | 87(90.6)   | 174(91.6)  |
| 혼자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 7( 7.4)    | 9( 9.4)    | 16( 8.4)   |
| 계              | 94(100.0)  | 96(100.0)  | 190(100.0) |

안이 없는 현 노인들의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 ① 노인 상황악화 시 지속 거주의사

많은 노인들이 부부 중 한 명만 남게 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하였으며 반 정도의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현재의 집에서 그대로 살고자 하였다(표 11). 현재 부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때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겠는지에 대하여 83.2%(86.0%, 80.6%)가 그렇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 혼자 되었을 때 생활이 어렵거나 건강이 더 나빠져서 거동이 불편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하여 50.0%(44.2%, 55.9%)의 노인이 불편하더라도 현재 집에 그대로 거주하겠다고 하고, 28.2% (32.6%, 23.7%)의 노인들은 자식의 집으로 가서 자식과 함께 살고자 하였으며, 단지 9.6%(11.6%, 7.5%)의 노인만이 노인공동주거로 이사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노인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을 나타내 준다.

표 11. 상황악화시 지속거주의사

| 상황                   | 구분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배우자 사망시 현 주택 지속 거주여부 | 계속 거주하겠다                  | 49(86.0)   | 50(80.6)   | 99(83.2)   |
|                      | 이사한다                      | 5( 8.8)    | 10(16.1)   | 15(12.6)   |
|                      | 기타                        | 3( 5.3)    | 2( 3.2)    | 5( 4.2)    |
|                      | 계                         | 57(100.0)  | 62(100.0)  | 119(100.0) |
| 거동 불편시 지속거주 의사       | 불편하더라도 현재 집에 그대로 거주       | 42(44.2)   | 52(55.9)   | 94(50.0)   |
|                      | 현재 주택의 불편한 점을 수리하여 그대로 거주 | 6( 6.3)    | 1( 1.1)    | 7( 3.7)    |
|                      | 동네근처 노인공동주택 있으면 이사        | 11(11.6)   | 7( 7.5)    | 18( 9.6)   |
|                      | 자식의 집으로                   | 31(32.6)   | 22(23.7)   | 53(28.2)   |
|                      | 기타                        | 5( 5.3)    | 11(11.8)   | 16( 8.5)   |
| 계                    |                           | 95(100.0)  | 93(100.0)  | 188(100.0) |

이는 전 세계적으로 aging in place를 노인주거의 최선책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는 성향과 같은 맥락에서 농촌 노인주택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농촌의 노인주거는 가능한 현재의 주택에서 여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살 수 있는 방안을 최고 목표로 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② 거동 불편 시 수발자

많은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져서 1개월 이상 누워있게 되었을 경우, 자녀가 돌보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거동이 불편해져서 한 달 이상 누워있으면 돌보아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하여 88.9%(87.1%, 90.6%)가 있다고 하였으며, 없다고 한 경우도 11.1%(12.9%, 9.4%)나 되었다(표 12). 또한 수발자가 있는 경우 수발자로는 ‘자녀’라고 한 경우가 67.3%(78.3%, 5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로 14.3%(14.5%, 14.1%)였으며, 배우자와 자녀 모두를 지적한 경우도 13.1%(2.4%, 23.5%)였다.

조사대상인 농촌노인들은 장기간 누워있게 되면 자녀가 수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자녀들이 농촌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지역단위에서의 노인 수발을 위한 대안책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표 12. 거동 불편 시 가능한 수발자 유무 및 종류

| 수발자    | 구분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유무     | 있음       | 81(87.1)   | 87(90.6)   | 168(88.9)  |
|        | 없음       | 12(12.9)   | 9( 9.4)    | 21(11.1)   |
|        | 계        | 93(100.0)  | 96(100.0)  | 189(100.0) |
|        | 자녀       | 65(78.3)   | 48(56.5)   | 113(67.3)  |
| 종류     | 배우자      | 12(14.5)   | 12(14.1)   | 24(14.3)   |
|        | 배우자 + 자녀 | 2( 2.4)    | 20(23.5)   | 22(13.1)   |
|        | 이웃분들     | 1( 1.2)    | 3( 3.5)    | 4( 2.4)    |
|        | 시동생,동서   | 1( 1.2)    | 2( 2.4)    | 3( 1.8)    |
| 알 수 없다 |          | 2( 2.4)    | -          | 2( 1.2)    |
| 계      |          | 83(100.0)  | 85(100.0)  | 168(100.0) |

#### (3) 현재 주택에의 만족도

많은 노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고 있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64.8%(67.5%, 60.7%)가 만족하고 있었고 9.9%(9.3%, 10.7%)가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평균 만족정도는 3.72(3.72, 3.71)로 높은 편이었다(표 13).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노인들이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긴 점과 농촌 주택의 노후상태 등을 고려할 때 주택의 질적 수준이 높아서라기보다는 현재의 주택에 익숙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13. 주거만족도

| 주거만족도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아주 만족 | 6(14.0)    | 7(25.0)    | 13(18.3)   |
| 만족    | 23(53.5)   | 10(35.7)   | 33(46.5)   |
| 보통    | 10(23.3)   | 8(28.6)    | 18(25.4)   |
| 불만    | 4( 9.3)    | 2( 7.1)    | 6( 8.5)    |
| 아주 불만 | -          | 1( 3.6)    | 1( 1.4)    |
| 계     | 43(100.0)  | 28(100.0)  | 71(100.0)  |

## 2.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인지정도 및 입주의사

### 1)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인지정도

농촌노인들은 노인공동주거시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한 편이었다. 집이 넓어 살기 어려워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 비용을 받고 일상생활, 식사, 의료 등을 보장해 주는 노인 공동주거(설비타운)에 대하여, 18.9%(28.4%, 9.5%)는 알고 있고, 35.8%(32.6%, 38.9%)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여 조사대상노인의 54.7%(61.0%, 48.4%)만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고, 45.3%(38.9%, 51.6%)는 모르고 있었다(표 14).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히 농촌지역에는 아직까지도 노인부양은 자식이 하여야한다는 의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또한 농촌지역에 노인공동주거가 제공된 사례가 적기 때문에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14.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인지정도

| 인지정도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chi^2$ |
|----------|------------|------------|------------|----------|
| 앎        | 27(28.4)   | 9( 9.5)    | 36(18.9)   | 11.204** |
| 들어본 적 있음 | 31(32.6)   | 37(38.9)   | 68(35.8)   |          |
| 모름       | 37(38.9)   | 49(51.6)   | 86(45.3)   |          |
| 계        | 95(100.0)  | 95(100.0)  | 190(100.0) |          |

\*\*p&lt;.01

### 2) 입주의사 및 입주방식

#### (1) 입주의사

노인공동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노인 공동주거가 우리 마을이나 인근에 제공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46.4%(40.6%, 52.1%)가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36.5%(35.4%, 37.5%)가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표 15).

이러한 결과는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인지정도를 고려해 볼 때 입주의사는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농촌지역에 적합한 노인주거대안이 제공될 경우 수용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암시해 준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적합한 노인주택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 (2) 입주방식

노인공동주거에 입주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51.0%(46.9%, 54.9%)는 ‘매달 일정 비용을 하숙비처럼 내고 생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40.0%(38.8%, 41.2%)는 ‘처음에 일정 비용을 내고 입주하여 내는 비용없이 계속 생활하는 종신형’ 방식을 선택하였다. 또한 종신형의 경우 퇴소시 입주보증금을 반납받는 것을 87.5%(83.3%, 91.7%)가 선호하였다.

입주방식은 노인들이 본인의 경제적 여건 등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병행 운영하여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표 15. 노인공동주거에의 입주방식

|      | 구분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입주의사 | 있음          | 39(40.6)   | 50(52.1)   | 89(46.4)   |
|      | 없음          | 34(35.4)   | 36(37.5)   | 70(36.5)   |
|      | 좀더 생각해 보겠음  | 22(22.9)   | 7( 7.3)    | 29(15.1)   |
|      | 기타          | 1( 1.0)    | 3( 3.1)    | 4( 2.1)    |
|      | 계           | 96(100.0)  | 96(100.0)  | 192(100.0) |
| 입주방식 | 종신형         | 19(38.8)   | 21(41.2)   | 40(40.0)   |
|      | 전세형         | 3( 6.1)    | 2( 3.9)    | 5( 5.0)    |
|      | 하숙형         | 23(46.9)   | 28(54.9)   | 51(51.0)   |
|      | 기타(무료입주...) | 4( 8.2)    | -          | 4( 4.0)    |
|      | 계           | 49(100.0)  | 51(100.0)  | 100(100.0) |
| 종신비용 | 반납함         | 10(83.3)   | 11(91.7)   | 21(87.5)   |
|      | 반납하지 않음     | 2(16.7)    | 1( 8.3)    | 3(12.5)    |
|      | 계           | 12(100.0)  | 12(100.0)  | 24(100.0)  |

하숙형의 경우, 적합한 비용에 대하여 43.9%(45.5%, 43.3%)가 5만원미만이라고 하였고, 31.7%(9.1%, 40.0%)가 10-20만원 미만이라고 하였으며, 경남지역의 경우 20-30만원 미만이라고 한 경우가 36.4%나 되었다(표 16). 이러한 다양한 결과는 농촌 노인들의 연 수입이 다양하게 나타난 결과와 연계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비용을 동일하게 하기보다는 노인의 연 수입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입주비용의 경우 특히 농촌지역 노인들의 연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건축비와 유지관리비가 가능한 최소한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임을 감안하여 노인생활에 필요한 필수공간만으로 공간구성을 하여 건축비를 절감하고, 남향 배치, 단열재 사용, 태양열 이용 등을 하여 입주 관리비중 냉·난방비를 줄이며, 청소와 간단한 수선 등은 건강한 노인과 청년회 등 마을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가능한 자치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유지관리비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표 16. 하숙형의 경우 적합한 월비용

| 하숙형의 생활비<br>가능액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5만원 미만          | 5(45.5)    | 13(43.3)   | 18(43.9)   |
| 10만원 - 20만원     | 1( 9.1)    | 12(40.0)   | 13(31.7)   |
| 20만원 - 30만원     | 4(36.4)    | 3(10.0)    | 7(17.1)    |
| 40만원 - 50만원     | 1( 9.1)    | 2( 6.7)    | 3( 7.3)    |
| 계               | 11(100.0)  | 30(100.0)  | 41(100.0)  |

#### (3) 재산처분 의사 및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 종류

조사대상 노인의 57.9%(58.9%, 56.8%)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그 대가로 여생을 위한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보장받는데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31.6%(25.3%, 37.9%)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표 17).

표 17. 여생보장을 위한 재산처분의사

| 재산처분의사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예      | 24(25.3)   | 36(37.9)   | 60(31.6)   |
| 아니오    | 56(58.9)   | 54(56.8)   | 110(57.9)  |
| 좀더 생각  | 15(15.8)   | 5( 5.3)    | 20(10.5)   |
| 계      | 95(100.0)  | 95(100.0)  | 190(100.0) |

또한 노인공동주거에의 입주비용이 없는 경우 현재의 집과 대지, 경작지를 모두 팔아서 그 비용으로 노인을 위한 공동주거에 입주하여 서비스를 보장해 줄 경우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51.6%-52.4%(54.3%-55.9%, 48.4%-50.5%)의 노인들은 요구가 없다고 하였고, 36.2% -37.0%(25.8%-27.2%, 45.2%-47.3%)의 노인들만이 서비스 요구가 있었다(표 18). 이러한 결과는 농촌 노인들이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앞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노인공동주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나타난 결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농촌지역을 고려한 소규모이며 저층의 편리한 노인공동주거가 제공된다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18. 서비스 요구

| 서비스       | 지역 | 요구 있음<br>f(%) | 요구 없음<br>f(%) | 좀더 생각<br>f(%) | 기타<br>f(%) | 계<br>f(%)  |
|-----------|----|---------------|---------------|---------------|------------|------------|
| 간호<br>서비스 | 경남 | 25(27.2)      | 50(54.3)      | 16(17.4)      | 1(1.1)     | 92(100.0)  |
|           | 전북 | 42(46.1)      | 45(49.5)      | 4( 4.4)       | -          | 91(100.0)  |
|           | 전체 | 67(36.6)      | 95(51.9)      | 20(10.9)      | 1(.5)      | 183(100.0) |
| 수발<br>서비스 | 경남 | 25(27.2)      | 50(54.3)      | 16(17.4)      | 1(1.1)     | 92(100.0)  |
|           | 전북 | 42(45.2)      | 47(50.5)      | 4( 4.3)       | -          | 93(100.0)  |
|           | 전체 | 67(36.2)      | 97(52.4)      | 20(10.8)      | 1(.5)      | 185(100.0) |
| 치료<br>서비스 | 경남 | 25(27.2)      | 50(54.3)      | 16(17.4)      | 1(1.1)     | 92(100.0)  |
|           | 전북 | 42(45.2)      | 47(50.5)      | 4( 4.3)       | -          | 93(100.0)  |
|           | 전체 | 67(36.2)      | 97(52.4)      | 20(10.8)      | 1(.5)      | 185(100.0) |
| 취침<br>서비스 | 경남 | 24(25.8)      | 52(55.9)      | 16(17.2)      | 1(1.1)     | 93(100.0)  |
|           | 전북 | 43(47.3)      | 44(48.4)      | 4( 4.4)       | -          | 91(100.0)  |
|           | 전체 | 67(36.4)      | 96(52.2)      | 20(10.9)      | 1(.5)      | 184(100.0) |
| 식사<br>서비스 | 경남 | 25(26.9)      | 51(54.8)      | 16(17.2)      | 1(1.1)     | 93(100.0)  |
|           | 전북 | 43(47.3)      | 44(48.4)      | 4( 4.4)       | -          | 91(100.0)  |
|           | 전체 | 68(37.0)      | 95(51.6)      | 20(10.9)      | 1(.5)      | 184(100.0) |
| 일상<br>생활  | 경남 | 25(26.9)      | 51(54.8)      | 16(17.2)      | 1(1.1)     | 93(100.0)  |
|           | 전북 | 43(47.3)      | 44(48.4)      | 4( 4.4)       | -          | 91(100.0)  |
|           | 전체 | 68(37.0)      | 95(51.6)      | 20(10.9)      | 1(.5)      | 184(100.0) |

#### (4) 운영주체

노인공동주거는 누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하여 반 이상의 노인이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기를 원하였다. 54.8%(49.5%, 60.0%)가 중앙정부라고 하고, 17.7% (22.0%, 13.7%)가 마을자치, 19.4%(17.6%, 21.1%)가 군 이라고 하여 정부차원에서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었다(표 19).

표 19. 노인공동주거의 운영주체

| 운영주체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중앙정부 | 45(49.5)   | 57(60.0)   | 102(54.8)  |
| 마을자치 | 20(22.0)   | 13(13.7)   | 33(17.7)   |
| 군    | 16(17.6)   | 20(21.1)   | 36(19.4)   |
| 도    | 1( 1.1)    | -          | 1( .5)     |
| 개인   | 2( 2.2)    | 2( 2.1)    | 4( 2.2)    |
| 기타   | 7( 4.4)    | 3( 3.2)    | 10( 5.4)   |
| 계    | 91(100.0)  | 95(100.0)  | 186(100.0) |

이러한 결과는 민간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결과로 본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볼 때 군 단위에서 비용과 시설 및 운영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운영도 총괄하되, 가능한 농촌의 건강한 노인과 부녀회 등 농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3. 노인공동주거시설의 공간구성에 대한 요구

#### 1) 공동주거시설의 거주자 구성

노인공동주거의 거주자 구성에 대하여 43.9%(38.0%, 49.5%)가 ‘노인들만 살도록’ 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자식과 같이 살 수 있도록’ 16.6%(15.2%, 17.9%) 또는 ‘자식과 같은 집은 아니지만 가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6.6%(18.5%, 14.7%)가 선호하여 자식과의 동거나 근거리 거주를 선호하였고, 자식은 아니더라도 젊은 세대와 가까이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경우도 19.8%(22.8%, 16.8%)가 되었다(표 20).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자녀와의 동거나 근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나타난 결과로, 농촌지역의 노인공동주거는 노인들만 거주하도록 하되 소규모 단위로 분산 배치함으로써 젊은 세대와 가까이서 어울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20. 노인공동주거의 거주자 구성

| 희망 동거인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노인들만       | 35(38.0)   | 47(49.5)   | 82(43.9)   |
| 자식들과 같이    | 14(15.2)   | 17(17.9)   | 31(16.6)   |
| 자식들과 가까이   | 17(18.5)   | 14(14.7)   | 31(16.6)   |
| 젊은 세대와 가까이 | 21(22.8)   | 16(16.8)   | 37(19.8)   |
| 기타         | 5( 5.4)    | 1( 1.1)    | 6( 3.2)    |
| 계          | 92(100.0)  | 95(100.0)  | 187(100.0) |

#### 2) 위치

많은 노인이 노인공동주거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건설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노인공동주거가 우리 지역의 어느 곳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현재 살고 있는 곳의 마을회관/경로당을 포함하여 마을이라고 한 경우가 61.7%(65.2%, 58.4%)로 가장 많았다(표 21). 따라서 노인공동주거는 대규모로 하여 한 곳에 집중시켜 배치하기보다는 소규모로 하여 마을 단위

표 21. 노인공동주거의 지역내 위치

|           | 지역 내 위치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마을/<br>동네 | 마을 중앙/가운데/중심  | 17(18.5)   | 18(18.8)   | 35(18.6)   |
|           | 마을 근처/가까이/인근/<br>변두리  | 9( 9.8)    | 12(12.5)   | 21(11.2)   |
|           | 마을/마을 안/아무곳   | 15(16.3)   | 2( 2.1)    | 17( 9.0)   |
| 마을<br>회관  | 마을회관 근처/주변  | 14(15.2)   | 13(13.5)   | 27(14.4)   |
|           | 마을회관/경로당 자리   | 5( 5.4)    | 11(11.5)   | 16( 8.5)   |
| 접근성       | 가까운 곳   | 6( 6.5)    | 3( 3.1)    | 9( 4.8)    |
| 지역<br>특성  | 물/교통/산/경치/공기 좋은<br>곳, 숲 있는 곳, 생활<br>편리한 곳, 이용 용이한<br>곳, 차량이용 용이한 곳,<br>도로주변, 사람/노인 많<br>은 곳, 사람 없는 곳, | 8( 8.7)    | 15(15.6)   | 23(12.2)   |
|           | 군, 면, 읍   | 5( 5.4)    | 5 (5.2)    | 10( 5.3)   |
| 기타        | 기타  | 13(14.1)   | 17(17.7)   | 30(16.0)   |
|           | 계   | 92(100.0)  | 96(100.0)  | 188(100.0) |

표 22. 노인공동주거의 형태

|      | 구분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주거유형 | 개인주택형   | 55(59.8)   | 77(81.1)   | 132(70.6)  |
|      | 연립주택형   | 7( 7.6)    | 7( 7.4)    | 14( 7.5)   |
|      | 낮은 아파트형 | 22(23.9)   | 11(11.6)   | 33(17.6)   |
|      | 기타      | 8( 8.7)    | -          | 8( 4.3)    |
|      | 계       | 92(100.0)  | 95(100.0)  | 187(100.0) |
| 층수   | 1 층     | 59(68.6)   | 81(84.4)   | 140(76.9)  |
|      | 2 층     | 10(11.6)   | 6( 6.3)    | 16( 8.8)   |
|      | 1 - 2층  | 2( 2.3)    | 3( 3.1)    | 5( 2.7)    |
|      | 2 - 3층  | 2( 2.3)    | 1( 1.0)    | 3( 1.6)    |
|      | 3 층     | 9(10.5)    | 3( 3.1)    | 12( 6.6)   |
|      | 3 - 4층  | 1( 1.2)    | -          | 1( .5)     |
|      | 8층, 10층 | 3( 3.5)    | 1( 1.0)    | 4( 2.2)    |
|      | 고층      | -          | 1( 1.0)    | 1( .5)     |
|      | 계       | 86(100.0)  | 96(100.0)  | 182(100.0) |

로 분산배치시키는 것이 aging in place 개념과 농촌의 경관 유지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본다.

### 3) 주거유형

많은 노인들이 단층으로 된 개인주택형태의 노인공동주거를 원하고 있었다. 노인공동주거의 주거유형에 대하여 70.6%(59.8%, 81.1%)의 노인이 개인주택형을, 17.6%(23.9%, 11.6%)는 낮은 아파트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또한 노인공동주거의 집 층수가 1층이기를 원하는 노인은 76.9%(68.6%, 84.4%)였고, 2층을 원하는 노인은 8.8%(11.6%, 6.3%)로 대부분의 노인이 1층이나 2층을 원하였으며 8층 이상의 고층을 원하는 노인은 2.7%(3.5%, 2.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노인들 대부분이 현재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므로 친숙한 곳에서 살고자 하는 노인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농촌의 경관보존과 환경친화성을 고려할 때 단층의 개인주택형, 또는

3층 정도의 연립주택형이 농촌의 노인공동주거 유형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 4) 규모

농촌의 노인공동주거는 대규모보다는 10-20명, 또는 50명 이하의 소규모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택은 10-30평 정도로 하는 것을 농촌노인들은 선호하였다(표 23).

노인공동주거의 규모에 대하여 46.9%(30.6%, 71.9%)는 10-20명 미만이 적절하다고 하였고, 16.0%(18.4%, 12.5%)는 20-30명이라고 하였으며 30-50명이라고 한 노인은 12.3%(12.2%, 12.5%)였다. 즉 75.2%의 노인들이 5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노인공동주거의 개별 주거단위도 소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인들이 원하는 노인공동주거의 개인 집 규모는 10-20평이 38.8%(47.5%, 31.4%), 20-30평이 26.4%(18.6%, 32.9%), 10평 미만이 18.6%(13.6%, 22.9%)로 적은 규모를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출가 후 노인부부나 노인 혼자만 살게 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큰 집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부담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3. 노인공동주거의 규모

|            | 구분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전체시설<br>규모 | 10 - 20명미만 | 15(30.6)   | 23(71.9)   | 38(46.9)   |
|            | 20 - 30명   | 9(18.4)    | 4(12.5)    | 13(16.0)   |
|            | 30 - 50명   | 6(12.2)    | 4(12.5)    | 10(12.3)   |
|            | 70 - 80명   | 1(2.0)     | -          | 1( 1.2)    |
|            | 100 - 300명 | 8(15.7)    | -          | 8( 9.9)    |
|            | 기타         | 10(20.4)   | 1( 3.1)    | 11(13.6)   |
|            | 계          | 49(100.0)  | 32(100.0)  | 81(100.0)  |
| 개별집<br>규모  | 2 - 10평    | 8(13.6)    | 16(22.9)   | 24(18.6)   |
|            | 10 - 20평   | 28(47.5)   | 22(31.4)   | 50(38.8)   |
|            | 20 - 30평   | 11(18.6)   | 23(32.9)   | 34(26.4)   |
|            | 30 - 40평   | 1( 1.7)    | 1( 1.4)    | 2( 1.6)    |
|            | 40 - 50평   | 10(16.9)   | 5( 7.1)    | 15(11.6)   |
|            | 60 - 70평   | -          | 2( 2.9)    | 2( 1.6)    |
|            | 70 - 80평   | 1( 1.7)    | 1( 1.4)    | 2( 1.6)    |
|            | 계          | 59(100.0)  | 70(100.0)  | 129(100.0) |

### 5) 침실구성

#### (1) 침실사용방식

노인공동주거의 침실은 여자노인 또는 남자노인 몇 명이 같이 사용하는 공동사용방식과, 각 방을 노인 개인이나 부부가 사용하는 개인사용방식을 선호하는 노인의 분포가 유사하였다. 노인공동주거에서 침실의 사용방식에 대하여 51.3%(54.8%, 47.9%)가 공동사용방식을 선호하였고, 47.6%(43.0%, 52.1%)가 개인사용방식을 선호하였

표 24. 노인공동주거에서의 침실 사용방식

|            | 구 분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침실<br>사용방식 | 할아버지, 할머니개개인<br>마다 각방 사용, 부부는<br>부부방으로     | 40(43.0)   | 50(52.1)   | 90(47.6)   |
|            | 할아버지, 할머니로 구<br>분하여 몇몇 노인분이<br>방을 같이 사용    | 51(54.8)   | 46(47.9)   | 97(51.3)   |
|            | 기타(부부인 경우는 부<br>부방, 부부가 아니면 할<br>아버지 할머니로) | 2( 2.2)    | -          | 2( 1.1)    |
| 1실<br>사용인원 | 계  | 93(100.0)  | 96(100.0)  | 189(100.0) |
|            | 1명   | 2( 5.9)    | -          | 2( 2.3)    |
|            | 2 - 4명                                     | 14(41.2)   | 19(35.2)   | 33(37.5)   |
|            | 5- 6명                                      | 14(41.2)   | 29(53.7)   | 43(48.9)   |
|            | 7- 8명                                      | 3( 8.8)    | 4( 7.4)    | 7( 8.0)    |
|            | 9-10명                                      | 1( 2.9)    | 2( 3.7)    | 3( 3.4)    |
|            | 계  | 34(100.0)  | 54(100.0)  | 88(100.0)  |

다(표 24).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촌에는 아직까지도 공동체 생활의식이 남아있지만 점차 개인중심의 생활의식이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의 노인 공동주거의 개설은 공동사용방식과 개인사용방식의 두 방식으로 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인공동주거의 개인실을 공동사용할 경우 1실은 5-6인이 공동사용하는 것을 48.9%(41.2%, 53.7%)가, 2-4인이 공동사용하는 것을 37.5%(41.2%, 35.2%)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공동사용 개인실은 2-6인 사이에서 공동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 (2) 취침실의 기거양식

많은 노인들이 취침실은 온돌방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노인공동주거에서 취침방의 양식에 대하여 81.2%(81.1%, 81.3%)가 온돌방을 선호하였고, 침대방은 16.2%(15.8%, 16.7%)가 선호하였다(표 25).

따라서 노인공동주거의 취침실은 우리나라 고유의 방식인 온돌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침대를 선호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또한 노인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바닥에 앓고 일어서기가 불편해 짐을 고려해 볼 때 온돌방으로 하되 필요시 침대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방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25. 노인공동주거 취침실의 기거양식

| 기거양식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온돌방     | 77(81.1)   | 78(81.3)   | 155(81.2)  |
| 노인용 침대방 | 15(15.8)   | 16(16.7)   | 31(16.2)   |
| 기타      | 3( 3.2)    | 2( 2.1)    | 5( 2.6)    |
| 계       | 95(100.0)  | 96(100.0)  | 191(100.0) |

## 6) TV시청 및 식사자세

많은 노인들이 TV는 바닥에 눕거나 바닥에 앓아서 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TV를 시청할 때 어떤 자세가 좋은지에 대하여 38.7%(47.4%, 30.2%)의 노인들은 바닥에 누워서, 30.4%(24.2%, 36.5%)는 바닥에 앓아서, 24.6%(20.0%, 29.2%)는 소파나 의자에 앓아서라고 하였다(표 26). 이러한 결과는 농촌 노인들이 아직까지 좌식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TV가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반해 온돌바닥에 눕거나 앓아서 장시간 TV를 시청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허리받침 등 편안한 자세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요구된다.

표 26. 생활자세

|            | 구 분            | 경남<br>f(%) | 전북<br>f(%) | 전체<br>f(%) |
|------------|----------------|------------|------------|------------|
| TV시청<br>자세 | 바닥(방/평상)에 앓아서  | 23(24.2)   | 35(36.5)   | 58(30.4)   |
|            | 소파나 의자에 앓아서    | 19(20.0)   | 28(29.2)   | 47(24.6)   |
|            | 바닥(방/평상)에 누워서  | 45(47.4)   | 29(30.2)   | 74(38.7)   |
| 식사<br>자세   | 기타(흔합, 상관없음 등) | 8( 8.4)    | 4( 4.2)    | 12( 6.3)   |
|            | 계              | 95(100.0)  | 96(100.0)  | 191(100.0) |
|            | 식탁             | 37(38.9)   | 41(42.7)   | 78(40.8)   |
|            | 평상             | 11(11.6)   | 8( 8.3)    | 19( 9.9)   |
|            | 온돌방            | 45(47.4)   | 47(49.0)   | 92(48.2)   |
|            | 기타             | 2( 2.1)    | -          | 2( 1)      |
|            | 계              | 95(100.0)  | 96(100.0)  | 191(100.0) |

온돌방에서 식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노인이 식탁을 사용하는 식사방식을 선호하는 노인보다 많았다. 식사실에서 식사하는데 편한 방식에 대하여 48.2%(47.4%, 49.0%)가 온돌방이 편하다고 하였고, 40.8%(38.9%, 42.7%)가 식탁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농촌에는 바닥에 상을 놓고 식사하는 방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좌식의 식사방식은 공간을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공간 활용면에서 이점을 가진다고 본다.

## V. 종합 및 결론

### 1. 연구결과의 종합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농촌노인의 주거요구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농촌 노인들은 1인이나 2인의 노인단독이나 노인부부 가구가 많고, 건강상태는 양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생활비 중 30% 정도를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견기, 목욕, 식사준비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 수행하기가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농촌노인을 위한 공동주거를 계획할 때 건강한 노인보다는 건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 노인들은 자녀보다는 이웃과 같은 교류를 하며 지내고 있었다. 따라서 주거계획 시 이웃사람들과의 교류가 지속되도록 해주는 공간계획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마을과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셋째, 농촌 노인들은 한 곳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지금까지 살아온 마을이나 주택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건강악화 시 자녀가 수발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돌볼 수 없음을 감안할 때 농촌 노인들이 자녀들의 도움없이 자립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노인주거대안이 요구된다.

넷째, 비록 노인공동주거에 대하여 과반수가 약간 넘는 노인만이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를 중 상당수의 노인들이 노인공동주거에의 입주 의사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농촌지역에도 노인공동주거의 수용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다섯째, 농촌 노인들은 노인공동주거의 입주방식으로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하숙형이나 입주 시 일정 비용을 내고 비용없이 계속 생활하는 종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숙형이나 종신형 중 노인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민간에 대한 노인들의 불신이 큰 점을 감안해 볼 때 정부기관에서 노인공동주거의 비용과 시설 및 운영 기준과 지침 등을 제시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여섯째, 농촌노인들이 선호하는 노인공동주거는 단층의 개인주택형태로서 10-50명 정도의 소규모 형태였다. 따라서 농촌 노인공동주거는 단층의 단독주택형태나 3층 정도의 연립주택형으로 하고, 대규모보다는 10-50명 단위의 소규모로 하여 짧은 세대와 가까이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분산배치하는 것이 aging in place 및 농촌의 경관유지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일곱째, 농촌노인들은 노인공동주거의 개인주택 규모로 10-30평 정도를 선호하였고, 개인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는 2-6인 정도가 좋다고 하였으므로 농촌 노인공동주거의 개인주택 단위는 10-30평 정도가 적합하며 개인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2-6인 정도가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여덟째, 농촌노인들의 생활실태를 감안해 볼 때, 노인 공동주거의 침실은 온돌방으로 하되 침대 사용이 가능하도록 크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TV 시청은 좌식으로, 식사는 좌식과 입식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농촌노인의 주거요구를 토대로 보면, 농촌 노

인을 위한 주거의 방향은 반드시 공동주거시설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일부 현재의 주택을 개조 수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 노인을 위한 주거개선의 방향을 크게 현재 개별주택을 개조하는 방안과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소규모 형식의 노인공동주거를 계획하는 방안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노인 거주 주택의 노후화되거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aging in place 개념을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안으로 노인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살아온 주택에서 그대로 살도록 해준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농촌 주택들이 노후화되어 개조를 한다고 해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적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이 경우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마을회관/경로당을 거점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는 집까지 방문하여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주택은 재가서비스의 수행이 원활히 되도록 개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기존의 노인거주 주택 중 개조가 가능한 주택을 노인들 몇 명이 동거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방안이다. 즉 각 침실은 각 노인이 사용하고 부엌과 식당, 거실, 욕실 등 공동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개조하는 것이다. 각 침실에는 노인이 거주하면서 필요한 옷장과 이불장 등을 각 개인이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 친숙함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이 안은 거주자인 노인 구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가능하다.

하나는 자립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들끼리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로,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난 후 사용하지 않는 빈 방을 다른 노인이 사용하고 대신 이에 해당하는 다른 자원, 즉 집안일하기나 음식 제공, 대화상대 되어주기 등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혼자나 노인부부만 살기보다는 함께 모여 살므로써 자원 활용 및 절약과,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자원을 분담함에 있어 이견이 생길 경우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하나는 자립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과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건강 악화된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이다. 건강한 노인이 건강 악화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돌보아 주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노인의 마음을 노인이 더 잘 알 수 있으므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더욱 편리하게 노인을 챙겨줄 수 있으며, 챙겨주는 노인도 나름대로 보람있는 삶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건강한 노인이라해도 노인의 건강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무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위급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나머지 하나는 건강 악화된 노인들끼리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로, 이는 스웨덴에서 처음 group home이 치매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생기게 된 동기와 일맥상통한다. 즉 건강이 악화되어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을 시설이 아닌 집과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 케어를 받도록 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상주하면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므로 노인보다는 부녀회에서 맡아서 케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의 정기적인 방문 등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녀회를 대상으로 노인의 질병에 따른 케어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주거시설로 하숙형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마을마다 소규모의 임대 노인공동주거를 신축하여 제공하는 방안이다.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이 노후화되어 개조보다 신축하는 경우가 경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나은 경우, 농촌 경관에 어울리게 단층이 가장 바람직하며 10명에서 20명 정도의 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노인공동주거를 짓는 방안이다. 주거유형은 타운 하우스식 단독주택형, 3층 이하의 연립주택형, 5층 이하의 아파트형 노인주거가 적합하다고 본다. 단위주택은 1침실형, 2침실형, 3침실형으로 다양하게 혼합하여 배치하는 것이 노인가구 특성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어 바람직하며, 각 단위주택은 침실 외에 욕실, 부엌, 식당, 거실, 수납공간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노인공동주거 내에 서비스 시설도 포함시켜 입주 노인 뿐 아니라 마을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노인공동주거에는 주거 기능만 제공해 주고 마을회관/경로당을 서비스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신축의 경우도 처음부터 그룹 홈이나 공유주택 유형으로 일부를 계획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처음부터 그룹 홈으로 할 경우 각 침실은 노인전용침실로 계획하고 나머지 공동실도 노인을 고려한 계획을 할 수 있어 크기와 위치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하게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강경숙(2003), 농촌형 노인주간보호시설 모형개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김연호(2002). 독립생활을 위한 노인주거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박경란·오찬옥·조현·김희년·김진홍(2003). 지역사회 노인서비스 연구. 진영문화사
4. 박대식·정명채·송미령·심재만·조홍식·최준렬(2004).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박대식·정기환·최경환·허장·조홍식·남기철(2001). 농촌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박윤호 외 7인(2003). 농촌경관주택 정책 및 마을리모델링에 관한 연구. 농림부·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7. 보건복지부(2005).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8. 송석전(2003).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안금순(2002). 농촌지역 재가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유성호(2004). 유료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1. 유성호(2001). 노인복지관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회
12. 이성국(2005), 농촌의 초고령화와 건강관리 방안, 농촌주민의 초고령화 대응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농촌진흥청,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5-27
13. 이희승(2004). 농촌지역 노인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임상봉·홍찬선·유상건·이한성·김형일(2004).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소득원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방향연구(II) - 생활환경정비를 중심으로,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15. 조남규(2003).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의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청양군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한정자·한경혜·모선희·유성호·김양희(2002). 농촌지역 노인복지실태와 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연구원. 농림부
17. 홍성태(2001). 농촌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강릉시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강릉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홍찬선·최병숙·박선희·박정란·오찬옥·전병관(2005). 노인복지를 고려한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2005 KSRP/RPA(JAP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Rural Amenities
19. Hardly, R. and S. Hatch(1981). Social Welfare and Failure of the State: Decentralized Social Service and Participatory Altern George Allen and Unwin
20. 阿部志郎 편(1993). 小地域福祉活動の原点-金澤善隣館活動の過去・現在・未來-. 全國社會福祉協議機構
21. 財團法人 醫療經濟研究・社會保險福祉協會(2001). 高齡者生活福祉センターにおける介護と居住機能のあり方に關する研究報告書. 醫療經濟研究機構
22. 平岡公一(1984). イギリスにおける對人サービス供給システムの再編成の動き-「パッチシステムの實驗的導入の事例」. 海外社會保障情報 第68號
23. 통계청자료: <http://www.nso.go.kr/추계인구> 2005년 7월 1일 기준

(接受: 2006. 4. 20)